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 2023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사 천 시
공 보 감 사 담 당 관



- 2023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사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 대한 2023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1. 16. ~ 1. 19.(4일간)
- 감사반: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2020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제 규정 관리 실태
 - 연구 및 시범사업 등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예산·회계·계약·인사 분야 업무처리의 적정성
 -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추진의 적정성
 - 기타 부서별 주요 업무 및 고유 업무 추진 실태 등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23. 1월 기준)

법인명칭	기관유형	소재지	설립일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기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2020년 5월

[자료: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누리집]

2. 행정조직('23. 1월 기준)

구분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국	팀	비고
기구	1	1	1	2	
현원	9명(공무원 파견 1명 포함)				

[자료: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누리집]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주의	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징수	세입
18	8	8	2	3	-	-	3	2,453	2,453	-	-

◆ 처분요구사항

1. 금고취급점 약정 업무 추진 소홀

- ▶ 재단의 각종 수입·지출업무 및 자금의 예치·운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정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지정금고에 대한 신규 약정 업무처리를 하지 않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주의

금고취급점 약정을 완료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및 실무 담당자 “주의” 조치 요구

2.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정비 소홀

- ▶ 「재단 보수규정」 제43조에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비의 지급 세부기준이 되는 [별표 6]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에 임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지급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 **처분요구사항: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 요구

3. 정액급식비 지급 부적정

- ▶ 「재단 보수규정」 [별표 6]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일에 정액급식비 13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달 140,000원의 지급하여 정액급식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정액급식비 “회수” 조치 요구

4.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자는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직원의 실제 출장여부와 출장시간을 확인하고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출장자의 실제 출장 여부 및 출장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여비 “회수” 조치 요구

5. 세출예산 처리 업무 부적정

- ▶ 재단에서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세출예산정리부, 수입장부 및 지출장부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정보시스템에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감사일 현재 예금원장과 실제 잔고를 상이하게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예금원장과 잔고를 일치시키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정” 조치 요구

6.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 ▶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재단 보수규정」 제39조(지급기준)에 따라 직원 중 호봉적용 대상자는 보수월액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단에서는 직원 중 호봉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비속인적 수당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비속인적 수당의 범위를 임의로 책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 요구

7. ◆◆◆◆◆ ◎◎◎◎ 특허권 및 상표권 계약 미체결

- ▶ 재단에서는 ◆◆◆◆◆ ◎◎◎◎ 상표권 계약 체결 내부 결재를 득하였으나, 이후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계약서 제3조(사용권의 범위)에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를 명시하였음에도 제4조(사용료)에서 상표권 계약 정액 및 기타 사용료에 대한 기준만을 명시하고 특허권 계약 정액 및 경상기술료를 명시하지 않아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음에도 특허권/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주의

재단의 재정적 손실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및 실무담당자 “주의” 조치 요구

8. 2021년 ○○○○○○ ▨▨▨▨▨ 시험·연구 사업 관리 소홀

- ▶ 재단에서는 2021년 ○○○○○○ ▨▨▨▨▨ 시험·연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약취(암모니아, 황화수소), 균체수, 부숙도를 연구 분석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 관리사가 1년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 ▶ ▨▨▨▨▨ 공급 농가 10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초 사업 기대효과를 충족한 대상 농가가 3가구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마저도 당초 연구 분석비로 5백만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전문 분석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3가구에 대하여 약취 저감률을 충족하였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 ▶ 또한, 재단에서는 본 사업 관련하여 ‘**□□□□□□** 및 **●●●●**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생산하였음에도 서명(전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에 의한 결재를 득하지 않아 시범사업 추진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및 실무담당자 “주의” 조치 요구

9. **□□ □□□□ □□□** 활용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 본 사업은 **□□ □□ □□**을 위한 **□□□**살포시설 및 음수투입시설, 미생물배양시설, 당밀미생물 생균제·발효톱밥 부숙제를 구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단에서 시행 후 취득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물품 구입 및 제작·설치함에 있어 계약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취득 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0. **●●●● ●●●●** 조성 용역 추진 부적정

- ▶ 재단에서는 **●●●● ●●●●** 조성 용역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서에 따르면 **●●●● ●●●●** 선정 및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자체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 ▶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용역 결과 미활용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1.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 및 「재단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식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일 출장이 아님에도 식비를 전액 지급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여비 “회수” 조치 요구

12. 관서업무비 집행 부적정

- ▶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서운영업무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 재단은 관서업무비를 부서운영업무비와 정원가산업무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양양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 부서운영업무비를 일부 직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하였고, 정원가산업무비를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3.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및 내역 공개 소홀

- ▶ 재단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및 내역공개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0~2022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14. ○○○○○○ ○○○ 활용 시험·연구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 ○○○○○○ ○○○ 활용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서상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정심의회 결정 없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 ▶ 또한, ○○○○○○ 시험·연구사업 대상자 선정 및 알림공문상에는 대표이사 전결로 문서처리하였으나, ○○○○○○ 시험·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결과보고에 서는 사무국장 전결로 결재를 완료하여 재단 사무위임규정에서 규정한 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심사평가를 완료하는 등 ○○○○○○ ○○○ 활용 시험·연구사업 추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5. ◆◆◆◆◆ ■■■강좌 등 강사관리 세부지침 미흡

- ▶ 재단은 ◆◆◆◆◆ ■■■강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생물발효관리사과정 및 발효커피, 발효식품, 친환경농업 과정 등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문강사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등 강사관리 운영 추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강좌 운영 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6. 공인 관리 소홀

- ▶ 「재단 공인관리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 [별표3]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해 사용하면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인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요구

17. 이사회 운영 업무 소홀

- ▶ 2020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회의 자료 - II. 심의·의결 사항 - 이사회 부의 안건상 ‘합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기재하여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자료를 작성하였고,
- ▶ 또한, 2020년 제*회 이사회 ~ 2022년 제*회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소관부서에 개최 결과를 보고하면서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지 않는 등 이사회 운영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8. 근무상황 관리 소홀

- ▶ 「재단 복무규정」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사유로 직원이 공가를 사용할 경우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적절히 산정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하나, 재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하면서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이 아닌 09시부터 18시까지 전일로 공가를 허가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